

2021년 제3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 심의 주요결과

[1호 안건: 연수구 송도동 396-7(공동주택)]

운영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일자	2021.3.19.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지에스건설(주)				
대지현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지 번	396-7	관련지번		
	대지면적	101,606.63㎡	용도지역(지구,구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4,950.20㎡	건폐율	14.24 %	층수 지하 : -1 / 지상 : 42층
	주 용 도	공동주택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동수 9동
	최고높이	119.95m	용적률	192.98%	연면적 합계 288,359.43㎡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구조)분야	○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공시 동재하시험(파일)을 필히 실시하고 허용내력을 확인 할 것. ○ 심의대상 건축물은 성능기반설계를 조건으로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시스템을 완화된 경우이므로 심의시 성능기반 설계결과의 구조계산서 반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성능기반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청자 답변에 따라 추후 완료된 성능설계보고서의 내용이 구조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심의용으로 제출된 구조계산서에서 누락된 지하층 PC부재와 근생 1변경기초의 설계근거 및 204동 문주의 안전성검토결과를 구조계산서에 추가할 것. ○ 공사감리시 구조분야협력은 구조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골조 시스템과 설계의도를 숙지하고 있는 구조설계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 현재의 설계내용은 심의용으로 최종 성능설계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선행동적해석 및 성능설계가 완료되고 완료된 내용에 따른 성능기반 내진설계 3자 검토완료 보고서 종료 후 착공할 것.			
	(토질)분야	○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